중도금 대출 알선 확인서
(중도금대출 무이자)

▣ 제1조 (목적 및 효력)

① 중도금 대출 알선 확인서(이하 "본 확인서"라 함)의 목적은 "갑"과 "을"이 체결한 분양계약서 제1조 제5항 및 제18조 중도금대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② 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납부일까지 적용되며, 기재 내용은 계약서 조항에 우선한다.

③ 본 확인서는 금융기관 및 "갑"과의 대출 협약이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분양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대출 알선이 불가능 할 수 있다.

▣ 제2조 (용어 정의)

① "중도금 대출알선"이라함은 "갑"이 1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 대출 업무를 협약하여, "을"에게 해당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중도금대출 무이자"이라함은 "갑"이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을"이 중도금을 대출하는 경우, "갑"이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납부 의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제1금융권, 제2금융권), 조합, 금고, 캐피탈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갑"과 업무협약를 맺고 "갑"의 보증 하에 "을"의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④ "회차별 중도금"이라 함은 "을"이 목적 부동산을 분양받음에 있어 부담하는 중도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제1조에 기재된 각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을 의미한다.

⑤ "중도금 대출"은 1~4회차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40%) 중 "갑"이 1개 이상의 각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알선한 비율만큼의 "을"의 대출을 의미한다. 단, "갑"이 알선하는 중도금의 납부 회차 및 비율, 범위 등은 "갑" 과 금융기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⑥ "중도금대출 이자"는 각 회차별 중도금 실행 시부터 입점지정기간 전일까지, "갑"과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라 "을"에게 알선되는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갑"이 "을"을 대신하여 대납하는 중도금대출 대납 이자를 의미한다. 단, "갑"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제3조 ("갑" 의 의무)

① "갑"은 중도금 대출에 대해 "을"에게 1개 이상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할 수 있으며, "갑"이 알선한 각 금융기관에서 "을"의 중도금 대출이 발생할 경우, "갑"은 입점지정기간 전일까지 각 금융기관의 이율과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에 관한 이자를 전액 대납한다.

② "갑"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지정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정보를 통지하고 대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중도금납부를 대출실행을 하지 않고 "갑"에게 자기부담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 "을"이 자기부담금으로 "갑"에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일(분양계약서 상 중도금약정일기준)로부터 입점지정기간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출금리[주]를 적용한 이자상당액을 "갑"이 산정하여 입점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에게 환불한다.
※주) : "갑"이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금대출을 실행(각 회차별)한 기존 계약자들의 대출 금리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갑"은 중도금 대출 중 일부 회차에 대해 "을"에게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이 불가하거나 변경될 경우, 해당하는 중도금 각 회차의 변경사항(일정 등)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갑"의 "을"에 대한 각종 통지 및 통보는 분양계약서 제5조("갑"의 "을"에 대한 통지 및 "을"의 주소 등 변경 통지 의무 등)를 준용한다.

▣ 제4조 ("을" 의 의무)

① "을"은 대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최종확인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대출을 실행, 유지 하여야 한다. 위 확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갑"의 알선에도 불구하고 "을"의 신용불량, 타행대출,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한 대출 부적격,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등으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을"은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중도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장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분양계약서 제2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할인료), 제3조(계약의 해제), 제4조(위약금 등)를 준용한다.

② "을"은 "갑"이 1개 이상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통보할 경우, 각각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과 비용(인지대 납부, 제반서류 발급비용 등)으로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 실행이 지연 또는 누락될 경우 중도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장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분양계약서 제2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할인료), 제3조(계약의 해제), 제4조(위약금 등)를 준용한다.

③ "을"은 "갑"이 중도금 대출 중 일부 회차에 대해 알선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경우 "을"은 알선이 불가하거나 변경될 경우 "갑"이 통보한 사항(일정 등)에 맞추어 산입하여 입금하도록 한다.

④ "을"은 "갑"이 알선한 각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분양계약서 제18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입주 전까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또는 타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대환하거나, 자기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단, 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전액 대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은행 내규에 따라 담보대출로 인한 대환금액이 "갑"이 알선한 중도금 대출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3조 제3항에서 "갑"이 제공하는 이자상당액의 혜택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 "갑"이 요구하는 서류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 회차별 중도금 현금 납부의 입증책임은 "을"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상기 "제2조 제6항" 및 "제3조"에 기재된 "중도금대출이자 대납"관련 사항은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람.

계약자 본인은 각 내용에 대해 디엠개발(주)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매도인("갑"): 디엠개발 (주)

대표이사 장 주 철

매수인("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1(송도1공구 B1BL)디엠시티 근린생활시설 ____ 동 _____ 호

계약자 : (서명 또는 날인)

공동명의자 : (서명 또는 날인)